

2026

공정거래 자율준수편람 (약관법)



임직원에 대한 공정거래 관련업무 지원을 위해 배포한 공정거래자율준수 편람 책자 및 전자파일(PDF)을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게시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모바일 접속경로

» 모바일 그룹웨어 → 게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 공정거래자율준수편람 PC 접속경로

» EP시스템 → 공지사항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검색

게시			↻	+
전사공지	업무가이드	현장소통	경조사	
🔔	'26년 상반기 WIDE:A Day 시행 안내	전은혜	26.01.29 15:26	
N	'26년 4월 경영실적 안내	임요환	26.05.15 08:15	
N	참고장 선임 안내(잭니클라우스)	장민지	26.05.15 07:58	
	보직변경 안내(포항운영1,2그룹)	이후욱	26.05.12 16:37	
	휴직 안내(용인하수, 김포하수)	장민지	26.05.08 12:35	

1 2 3 >

최근게시물(총1건) | 상세검색 ▾

새로고침

≡ 제목 ▾

≡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안내

CONTENTS

I 약관법

관련부서 : 분양임대

1. 약관법의 적용범위	
1) 약관법이란	03
2) 약관 규제에의 취지	03
3) 약관법상 약관의 정의	03
2. 약관법의 특성	
1)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	05
2) 개별약정의 우선	05
3) 약관의 해석	05
4)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	05
3. 불공정한 약관 조항	
1)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 원칙	06
2) 면책 조항의 원칙	07
3)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	08
4) 계약의 해제·해지	08
5) 채무의 이행	09
6) 고객의 권익보호	10
7) 의사표시의 의지	10
8) 소송 제기의 금지 등	11

II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관련부서 : 전사

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CP의 정의	15
2)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15
2. CP등급평가	
1)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17
2) CP등급평가 인센티브	17
3. 포스코와이드 CP 추진 경과	
1) CP추진 경과	18

※ 참고문헌

- 포스코, 공정거래준수 편람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행부서

포스코와이드 정도경영사무국

발행일

2026년 5월

I

약관법



01 약관법의 적용 범위

1. | 약관법이란

약관법은 공정거래법규 중 하나로 사업자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고객에게 불공정한 약관에 의한 거래를 강요함으로써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규제하기 위한 법임
강행규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 적용을 배제할 수 없음

2. | 약관 규제의 취지

약관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자기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을 삽입하게 되며, 고객은 이러한 조항을 간과하기 쉽고, 알았다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수정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고객의 입장에서는 계약내용 결정의 자유가 일방적으로 박탈되는 결과를 초래함. 사업자가 약관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규제함으로써 불공정한 약관의 횡포로부터 고객을 보호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약관 규제가 필요함

3. | 약관법상 약관의 정의(법 제 2조)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를 불문하고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내용이 되는 것

➔ 약관의 요건

- 일방 당사자에 의하여 미리 마련된 것이어야 함
- 상대방이 다수이어야 함
-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함
- 계약의 내용이 되는 사람을 포함하고 있어야 함

01 약관법의 적용 범위

→ 약관의 종류(판매)

- 판매점 지정 계약서
- 수출제품 매매 기본 계약서
- 제품 공급(매매)계약서
- 수출해송 일반약관
- 운송계약 경쟁입찰 약관
- 운송하역 일반계약규정
- 내수 재고품(주문품) 약관 등

→ 약관의 종류(구매)

- 설비 및 기기 구매 일반약관
- 시설공사계약 일반약관
- 설비시공 일괄계약 일반약관
- 인터넷 구매시스템 이용약관
- 설비구매/시설공사/인터넷 구매 입찰 유의서
- 원료구매 일반약관
- 협력작업 계약 일반약관 등

→ 약관의 종류(기타)

- 물품 매각 계약 일반약관 등

02 약관법의 특성

1. | 약관의 작성·설명 의무(법 제 3조)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한글로 작성하여 명시하고, 고객이 요구하는 경우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중요 내용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함. 이를 위반했을 경우, 사업자는 그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가능)

[사업자가 당해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경우]

-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 고객 요구 시 약관의 사본을 교부하여 이를 알 수 있도록 하지 않은 경우
-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않은 경우

2. | 개별약정의 우선(법 제 4조)

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약관에 우선함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약관보다는 개별약정이 더욱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임

3. | 약관의 해석(법 제 5조)

약관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고객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거나, 고객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안됨

4. | 불공정한 약관의 효력(법 제 16조)

불공정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며,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제외한 계약의 나머지 부분은 유효함
단, 유효한 부분만으로는 계약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일방 당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가 무효임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1. | 불공정한 약관의 일반 원칙(법 제 6조)

→ 일반원칙

-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약관 조항은 무효임
- 불공정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관 조항
 - ① 고객에게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 ② 고객이 거래행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③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약관의 내용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사업자 일방이 정하는 조항
- 불평등한 위약금 조항
- 헌법에서 규정하는 단체조직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 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 임차인의 준수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 시 임의로 단수, 단전, 폐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
- 소송 발생 시 소송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
- 고객의 재산권 처분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하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에 대하여 포괄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
-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고객에 전가시키는 조항
- 고객에게 통상적이지 않은 새로운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
- 전형적으로 인정되어지는 사항을 배제하는 조항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2. | 면책 조항의 원칙(법 제 7조)

➔ 계약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

- 계약 당사자의 책임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시키는 조항
 - ③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의 담보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거나 그 담보 책임에 따르는 고객의 권리행사의 요건을 가중하는 조항, 또는 계약 목적물에 관하여 견본이 제시되거나 품질·성능 등에 관한 표시가 있는 경우 그 보장된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배제 또는 제한하는 조항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주차장 내 도난, 파손 등 제반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일체 지지 않는다는 조항
- 도착한 날로부터 7일을 초과하여도 인수하지 않은 수하물의 파손, 분실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탁송수하물 운송약관
- 전기설비의 고장, 수리, 변경 등으로 전기의 공급을 중지, 사용제한을 하는 경우 고객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전기공급 규정
- 야구경기장에서 연습공이나 파울볼 기타의 사정으로 인하여 관중이 부상을 당한 경우 주최 측이 현장 응급치료만 책임지고 나머지 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내용의 경기장 관람약관
- 매매계약 체결일 이후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목적물의 멸실, 훼손에 대해 매수인이 책임진다는 부동산 매매약관
- 물품 매매에 있어 하자 담보책임을 보증기간 내의 부품상의 재질 또는 제조상의 결함으로 인한 고장에 대한 보증수리에 한한다는 자동차 판매약관
- 면적의 증감에 따른 정산을 요구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상가분양 계약
- 담보책임은 상품을 수수한 후 8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제기되지 아니한 이의에는 고려되지 아니 한다는 매매약관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3. | 과중한 손해배상 예정의 금지(법 제 8조)

→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계약조항은 무효임
- ① 여기서 손해배상액의 예정에는 지연손해의 배상, 전보 배상, 위약벌금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채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인 경우를 모두 포함
- ② '부당하게 과중한' 을 판단함에 있어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부동산 임대차의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으로 보증금의 30%를 예정하는 조항
- 토지분양 계약의 중도해지 시 손해배상금으로 매매대금의 20%를 예정하는 조항
- 계약 해제 시 계약금을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는 위약금으로 규정하고도 계약해제로 인하여 매도인이 입은 손해에 대해 매수인에게 배상책임을 다시 물을 수 있도록 한 조항
- 손해배상액인 위약금과는 별도로 미납연체료를 따로 청구하거나 기납부금에서 공제할 수 있게 하고 납부한 연체료는 환불하지 않는다는 조항

4. | 계약의 해제·해지(법 제 9조)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

- 계약의 해제·해지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해제·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 ② '부당하게 과중한'을 판단함에 있어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당시의 거래 관행과 경제상태 등을 두루 참작하여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하여 공정을 잃은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고려하게 됨
- ③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 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 ④ 계약의 해제·해지로 인한 사업자의 원상회복 의무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당하게 경감하는 조항
- ⑤ 계속적인 채권 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서 그 존속기간을 부당하게 단기 또는 장기로 하거나 묵시의 기간연장 또는 갱신 가능하도록 정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조항

- 사업자가 고객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독촉)하고 그 최고(독촉)기간 내에 이행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해제·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가능

- ① 이와 관련 채무불이행의 경우 채권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어도 당연히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취지의 실효 약관이 문제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이행을 최고하고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을 것임

- 계속적 채권관계(예. 전기·가스 공급 계약, 임대차 계약 등)에서 존속 기간을 부당하게 장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계약해지권을 제한하는 것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게 되며, 반면 부당하게 단기로 하는 것은 고객의 지위를 불안하게 하기 때문에 이를 규제함

5. | 채무의 이행(법제 10조)

➔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

- 채무의 이행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상당한 이유없이 급부의 내용을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조항
 - ② 상당한 이유없이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할 급부를 일방적으로 중지할 수 있게 하거나 제 3자로 하여금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조항
- 급부(계약의 목적물이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는 계약의 핵심적인 내용으로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하여 결정되어야 하며, 당사자 일방이 독단적으로 정하거나 변경해서는 안됨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약관의 예]

- 자재의 수급상 다른 회사의 동일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라는 아파트 분양 계약 조항
- 계약 후 차량 인도 시 변동된 가격으로 차량을 인수하도록 하는 자동차 판매 약관 조항
- "운송인은 통보 없이도 운송인을 타 운송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 라는 운송약관 조항
- 임대주택 사업자가 주택관리를 위탁관리로 전환시키더라도 임차인이 이의를 제기 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조항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6. | 고객의 권익보호(법 제 11조)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

- 고객의 권익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고객의 항변권, 상계권 등의 권리를 상당한 이유없이 배제하는 조항
 - ② 고객에게 부여된 기한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없이 박탈하는 조항
 - ③ 고객이 제 3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 ④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이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이득을 사업자가 개별적 약정이 아닌 약관으로 일방적으로 제한할 수 없음
-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객의 권리
 - ① 항변권 : 일정한 사유에 기하여 청구(급부)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 ② 상계권 :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과 채무를 대등액에서 소멸시킬 수 있는 권리
 - ③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
 - ④ 선택권 : 여러 형태의 급부 중에서 선택하여 급부를 확정하는 권리
- '기한의 이익'이란 그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양당사자가 얻는 이익으로 물품대금 납부 약정일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 그 이전에는 물품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 등임
- 약관으로 정하는 고객의 계약체결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는 적당한 범위 안에서 기간·구역·영업의 종류 등을 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효하나, 그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여 상대방의 영업의 자유나 기타의 거래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것은 무효임

7. | 의사표시의 의지(법 제 12조)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

- 의사표시에 관한 약관의 내용 중 다음의 조항은 무효임
 - ①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가 있을 때 고객의 의사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조항
 - ② 고객의 의사표시의 형식이나 요건에 대하여 부당하게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조항
 - ③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조항

03 불공정한 약관 조항

④ 고객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자의 의사표시에 부당하게 장기의 기한 또는 불확정 기한을 정하는 조항 사업자가 업무상 알게 된 고객의 비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하는 것을 허용하는 조항

- 고객의 의사표시 의제의 경우, 고객에게 상당한 기한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면 의사 표시가 표명되거나 표명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명확하게 따로 고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러한 고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효함
- 약관의 변경은 양 당사자간 계약 체결과 동일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에 합의를 한 경우에만 유효하고, 약관의 변경 시에는 고객은 그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고 종전 약관의 존속이나 계약 해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고객에게 부여되어야 함
- 의사표시에는 당사자로 하여금 법률관계를 신중하게 하고 명확하게 하기 위해 일정 한 방식을 요구하는 경우 이외에는 특별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으므로 고객의 의사 표시에 부당한 요건을 요구함으로써 고객의 의사표시 기회를 사실상 박탈하는 것은 무효임
- 의사표시의 도달은 실제로 상대방의 영역 내에 의사표시가 도달한 경우 또는 객관적으로 도달 되었다고 인정될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므로 임의로 사업자의 의사표시가 고객에게 도달된 것으로 보는 것은 무효임

8. | 소송 제기의 금지 등(법 제 14조)

➔ 소송 제기의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등에 관한 사항

-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의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이나 상당한 이유없이 고객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은 무효임
- 당사자간 자유로운 합의로 민·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약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경제적 약자에게 권리구제를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고객이 부당하게 불리하므로 무효임
- 재판관할에 대하여 법류에서 전속관할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간의 자유로운 합의는 원칙적으로 허용되나,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의 거래에 이용하기 위한 약관에 관할법원을 약정 하는 것은 관할지역 외에 소재하는 고객에게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무효임
- 입증 책임의 부담은 공평의 원칙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약관에 의해 고객에게 입증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무효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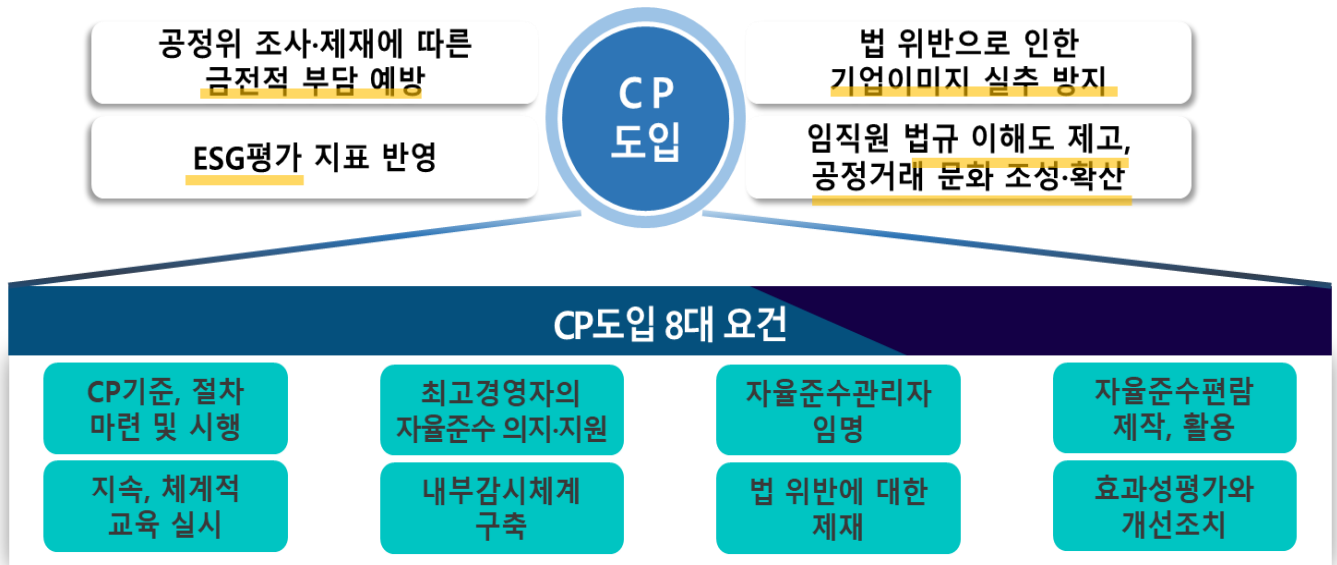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1. | CP의 정의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Compliance Program)란, 기업이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서 스스로 구축하고 운영하는 교육, 감독 등의 내부준법시스템으로, 임직원에게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에 관한 행동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정거래 관련 법규 위반 행위의 예방 및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일련의 규범이자, 시스템

2. | CP도입의 중요성 및 도입 요건



➔ CP도입의 중요성

- 공정위 조사·제재에 따른 금전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손해배상 등 경제적 부담 예방
- 법 위반으로 인한 기업이미지 실추 방지 : 법 위반 사실 보도 등으로 인한 사회 이미지 실추 예방
- ESG평가 지표 반영 : 공정거래 CP 적극 활용으로 ESG경영 강화
- 임직원 법규 이해도 제고, 공정거래 문화 조성·확산 : 임직원 스스로 법 위반 예방을 통한 공정거래 인식 향상

01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개요

➔ CP도입 8대 요건

1. CP기준과 절차 마련 및 시행

- 업무와 관련된 공정거래 관련 법규 준수 및 실천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시행

2. 최고경영자의 자율준수 의지 및 지원

- 최고 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와 방침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CP운영 적극 지원

3. CP담당 자율준수관리자 임명

- 이사회 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자율준수관리자를 임명하고, CP운영에 대한 책임 부여

4. 자율준수편람의 제작, 활용

- 자율준수관리자 책임하 공정거래 관련 법규, CP기준 및 절차를 포함하여 작성하고, 모든 임직원이 쉽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

5. 지속, 체계적 교육 실시

- CP기준과 절차, 관련 법규 준수사항을 임직원에게 효과적, 정기적인 교육 실시

6. 내부 감시 체계 구축

-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감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용

7. 법 위반에 대한 제재

- 법 위반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제재조치를 규정한 사규를 마련·운용하고, 법 위반 행위 발견 시 적극 대응 및 재발 방지

8. 효과성 평가와 개선 조치

- 효과적 CP운영을 위한 정기적인 CP기준, 절차 운용 등의 점검 평가와 개선조치 실시

02 CP등급평가

1. | CP등급평가 정의 및 목적

→ CP등급평가란

- CP 8대 도입 요건을 갖추고, CP를 운영한지 1년 이상 경과한 기업 중 평가를 신청한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CP운영실적 등을 기준으로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

→ CP등급평가 목적

- CP운영 기업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함으로써 우수한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충실한 CP운영을 유도 및 기업의 공정거래 역량 강화 목적

2.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법제화

공정거래법 제 120조의 2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의 확산)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정거래 자율준수평가를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그 평가 결과 등에 근거하여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감경이나 포상 또는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CP등급평가 인센티브 상세내용

CP평가등급	과징금감경	직권조사면제	시정명령 공표
최우수(AAA)	15%	2년	공표크기 및 매체수 2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우수(AA)	10%	1년 6개월	공표크기 및 매체수 1단계 하향 조정, 공표기간 단축
비교적 우수(A)	-	-	-

※ 비교적 우수(A)보다 하위 점수는 등급 미부여

03 포스코와이드 CP추진경과

1. | CP추진 경과

회사는 2008년 8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더욱 투명한 공정거래 기반을 구축한 이래로 현재까지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08 ~ 現

- '08.08 CP도입 선언, 운영지침 제정
- '08.12 자율준수관리자(이상필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발간(1차)
- '09.08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2차) * 하도급법 개정 내용 추가
- '10.03 CP전담부서(정도경영팀) 신설, 자율준수관리자(김진욱 경영지원본부장) 이사회 선임
- '10.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1.10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4차) * 공정거래 구매·판매부문 사례집
- '11.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5차) * 하도급 부문 보충
- '12.07 CP등급평가 참여(AA획득) * 중소기업 기준
- '13.03 자율준수관리자(안윤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4.07 포스코그룹 통합 자율준수편람 발간 * 집필진 회사로 참여('12, '14년 총 2회 참여)
- '16.03 자율준수관리자(김주현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8.03 자율준수관리자(이상걸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19.01 수의계약 사전감사제도 도입
- '21.03 자율준수관리자(강윤평 상임감사) 이사회 선임
- '22.12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6차)
- '23.08 하도급 상생협력 위원회(분쟁조정기구) 신설
- '23.12 CP등급평가 우수(AA) 획득 * 대기업 기준
- '24.03 자율준수관리자(황경호 정도경영실장) 이사회 선임
- '24.03 포스코그룹 CP활성화 TF 참여('24.03 ~ 11) * 그룹사 SNNC 지원
- '24.10 CP운영지침 개정(자율준수관리자 직무 강화, 교육프로그램 개선 등 CP업무 구체화)
- '24.10 회사 홈페이지 내 공정거래 분야 개선
- '25.01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7차)
- '25.04 자율준수관리자(안병도 상무보) 이사회 선임
- '25.12 CP등급평가 비교적 우수(A) 획득 * 대기업 기준
- '26.03 자율준수관리자(이평수 상부보) 이사회 선임
- '26.05 자율준수편람 개정 발간(8차) * '26년 1차 개정

POSCO

포스코와이드

www.poscowide.com